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5 - 6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최근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의 하나로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및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21조의2)

- 1)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최근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함.

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면제 근거 삭제(제28조의2 삭제)

- 1) 최근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거래'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공 의무를 면제하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법 제24조제3항제1호)이 삭제됨.
- 2)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거래)을 규정하던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제2항, 제32조)

라.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1)

- 1)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일부 시정명령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2)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5 / 팩스 (044)200-448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통령령 제 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연 100분의 20을”을 “연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채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 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처분 내용		
		1차	2차	3차
가. 법 제 5조제 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 5조제 3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법 제 5조제 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회원탈퇴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 5조제 5항을 위반하여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 6조제 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 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사. 법 제 8조제 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아. 법 제 8조제 2항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자. 법 제 8조제 3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법 제 9조를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카. 법 제 1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법 제 11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파. 법 제 1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법 제 13조제 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거. 법 제 13조제 2항·제 3항 및 제 5항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너. 법 제 14조에 따른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의 확인	법 제 32조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정정·취소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러.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머.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저.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처.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퍼.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고.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노.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도.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로.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모.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보.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2조 제 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 18조제 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 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 ----- 연 100분의 15를 -----.
제 28조의 2(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제외 대상) 법 제 24조제 3항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 (소비자가 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	<삭 제>
제 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	제 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판매업자가 법 제 15조제 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 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 1호 단서 또는 제 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 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제 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 -----
제 16조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 12조제 2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	제 16조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 -----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② 제 18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 -----.
제 17조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 12조제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营业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營業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7조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 -----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 -----.
제 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생략)	제 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 24조제 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제 13조제 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 12조제 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
③ ④ (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제 32조 (보고의무) 법 제 30조제 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제 32조 (보고의무)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 ----- ----- -----.